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과거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등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인 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여 산업디자인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저가 발주되는 사례가 많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을 전문기관이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6조)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서비스디자인까지 확대되는 경우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의 선정 범위에 서비스상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마.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벌칙 규정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품 및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은 필요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벌칙 등의 부과 가능하므로 삭제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품”을 각각 “제품 및 서비스”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을 “창작, 개선 및 기술개발 행위 등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에 관”을 “산업디자인을 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과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디자인개발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개발을”을 “개발 및 사업화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을 “평가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와”를 “선정·시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7조 또는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 제품 및 서비스 ----- ----- 창작, 개선 및 기술개발 행위 등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 산업디자인을 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1. ~ 4.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과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디자인개발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p> <p>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 개발 및 사업화를 ————— 평가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를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⑥ ————— 선정·시상·지원과 —————.</p>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9조(벌칙) 제16조—————.</p>